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영태 의원 외 6명

2. 제안이유

- 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 관한 성과 관리를 강화시키며,
- 나.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나. ESG 추진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5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2. 11. 18. ~ 11. 23.)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ESG는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하며,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ESG관련 규제 법안도 추진 중에 있음.
-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인 ESG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